

ORIGIN CASE

Vol. 6



- Case 1 가솔린 (제2710호)
- Case 2 미완성 우편 요금기
- Case 3 자전거
- Case 4 뉴싯대-릴 세트 (제9507.30호)
- Case 5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제8205.40호)
- Case 6 공기청정기
- Case 7 식료품용 저울
- Case 8 차량용 충전기
- Case 9 파인애플 및 바나나 껍데기
- Case 10 피부용 연고



한국원산지정보원

CONTENTS

Case 1.	가솔린 (제2710호)	1
Case 2.	미완성 우편 요금기	6
Case 3.	자전거	10
Case 4.	뉘싯대-릴 세트 (제9507.30호)	15
Case 5.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제8205.40호)	20
Case 6.	공기청정기	25
Case 7.	식료품용 저울	31
Case 8.	차량용 충전기	35
Case 9.	파인애플 및 바나나 푸레	39
Case 10.	피부용 연고	43



case

1

가솔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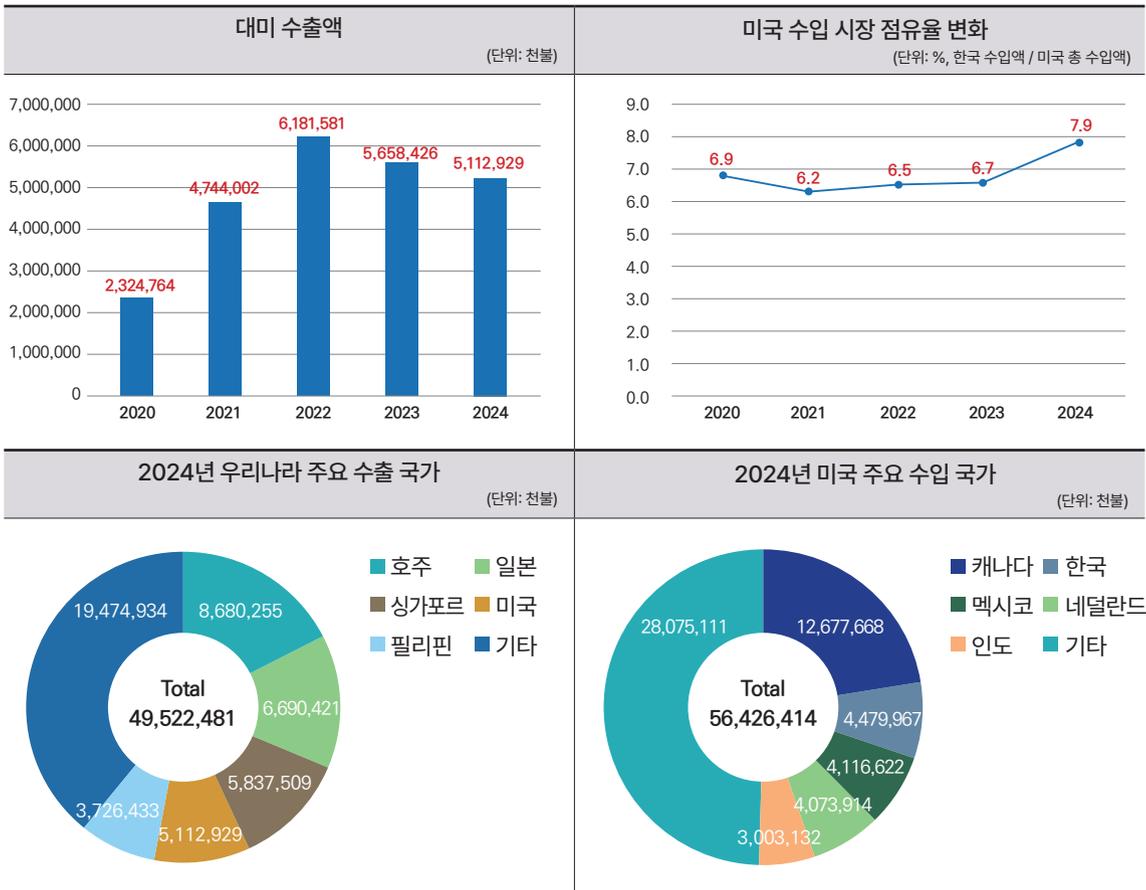
사례명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561986 (2001.08.21.)
사실관계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reformate)와 경질 나프타(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용 가솔린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7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0~8%
	미국 기본세율	각 하위 세번별로 상이함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7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561986 (2021.08.21.)

사실관계

요청자	Vitol S.A., Inc. (대리인: Collier, Shannon, Scott, PLLC)	
제품명	• 가솔린	
구성	• 리포메이트 (reformate) • 경질 나프타 (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	
제품 용도	• ASTM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미국 내 가솔린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87 octane 일반 가솔린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	
원재료 HTSUS	• 2710	
완제품 HTSUS	• 2710	

제조과정



01

A국에서 혼합 공정 수행



02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와 경질 나프타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
- 혼합 작업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변화는 아래와 같음

항목	밀도	API	R+M/2	RVP	벤젠	황	올레핀	방향족
리포메이트	0.831	38.8	96.1	2.64	1.68	10	1.4	78.6
경질 나프타	0.735	61.1	79.75	10.45	1.36	288	7.5	21.0
가솔린	0.788	51.7	87.1	6.94	1.49	163	4.7	46.9
% 변화 (리포메이트 기준)	-5.2	+31.7	-9.4	+162.9	-11.3	+1530	+235.7	-40.3
% 변화 (경질 나프타 기준)	+7.2	-16.4	+9.2	-33.6	+9.6	-43.4	-37.3	+123.3

2. 완성된 가솔린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CBP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공도 없는 단순한 두 물질의 혼합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5989 (1991.06.24.)*

- 사례** 바하마에서 여러 화합물을 혼합하여 세 가지 종류의 향산화제를 생산
- 판정** 개별 화합물이 서로 혼합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형성하고 각 성분의 개별적 특성이 더 이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례: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 사례** 소련산 가스 오일과 이탈리아산 연료유를 혼합하여 연료유 생산
- 판결** 혼합을 통해 생산된 최종 제품은 단순히 혼합하여 섞은 것에 불과하며, 외관, 성질(character), 동일성(identity) 또는 용도(use)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결론

- ✓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CBP는 화학물질의 혼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고 화학적 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혼합만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561986 (2001.08.21.), <https://rulings.cbp.gov/ruling/56198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750030/coastal-states-marketing-inc-v-united-states/?q=Coastal+States+Marketing%2C+Inc.+v.+United+States%2C+646+F.+Supp.+255+%28CIT+1986%29>

case
2

미완성 우편 요금기

요약

사례명	미완성 우편 요금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529 (2019.06.06.)
사실관계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프린트 축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입되며,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중국 내에서 제조된 후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과 최종 조립되어 미완성 우편 요금기가 완성됨(프린트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 차지)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다음의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트 축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 - 프린트 축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며, 프린트 축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반면, 프린트 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¹⁾

사 례 명 [미완성 우편 요금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529 (2019.06.06.)

사실관계

요청자	Brother Industries (USA), Inc. (대리인: Barnes, Richardson & Colburn, LLP)	
제품명	· 미완성 우편 요금기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트 축(Print Axis): 말레이시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PCBA, 인쇄 헤드 카트리지, 와이핑 스테이션, 프라이밍 스테이션, 잉크 공급 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 기타 서브 어셈블리: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터 모듈 베이스 어셈블리 (Printer module base assembly) - 이송 어셈블리 (Transport assembly) - 폐잉크 트레이 (Waste ink tray) - 커터 어셈블리 (Cutter assembly) - 테이프 이송 어셈블리 (Tape transport assembly) - 커버 어셈블리 (Cover Assembly) 	
용도	· 우편 처리 시스템에서 우편 요금 표시를 물리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 기능	

제조과정



상세과정

1.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을 중국으로 수입
 - 프린트 축 생산을 위한 부품 중 약 11%만이 중국산이며, 나머지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
2. 중국 제조 공정
 -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 (대부분 중국산 부품 사용)
 - 프린트 축과 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너트와 볼트로 결합
 - * 프린터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 차지
3. 최종 제품 미국 수출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판정 결과

- ☐ 신청인은 프린트 축이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를 차지하며, 프린트 축이 수행하는 인쇄 기능은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린트 축의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주장함
- ☐ 하지만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프린트 축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
 - 프린트 축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분이 되며, 프린트 축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반면, 프린트 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정 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므로, 특정 구성요소가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 최종 조립 등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어 해당 국가에서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한 바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기도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3

자전거

요약

사례명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358 (2020.01.23.)
사실관계	중국산 카본 프레임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 및 조달된 부품을 대만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자전거 완성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²⁾

사 례 명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358 (2020.01.23.)

사실관계

요청자	미공개 (대리인: Denise Basilio, Supervisory Import Specialist)	
제품명	• 자전거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 프레임: 중국산 • 바퀴, 구동계, 핸들바, 스템 등 부품: 대만산 • 기타 부품: 중국, 일본, 미국산 	

제조과정



01

여러 국가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



02

자전거 생산



03

미국 수출

상세과정

1. 중국에서 자전거 프레임 제작 후 대만으로 수입
2. 여타 부품들은 중국, 일본 및 미국에서 수입
3. 대만에서 자전거 완성품으로 조립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총비용에서 중국산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임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 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National Hand Tool(1993) 사건에서 국제무역법원("CIT")은 수공구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입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에게 불일치하는 표시 요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이와 더불어 CIT는 Energizer Battery(2016) 판례에서도 실질적 변형 기준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요소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밑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CBP는 아래 판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전거의 본질적 특성은 프레임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 사례** 자전거 튜브와 프레임은 대만산, 바퀴 림은 프랑스산, 안장은 이탈리아산이고 최종 조립은 대만에서 이루어짐
- 판결** 프레임을 제외한 기타 부품들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을지라도 해당 부품들이 프레임에 부착되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전거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대만임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 내용**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미국산 프레임에 부착하여 자전거 완성
- 판정** 중국산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될 때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로 충분히 변형되었다고 보고, 프레임의 원산지인 미국이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라고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 내용** 부품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었고, 프레임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서 완성차로 조립됨
- 판정** 프레임이 제작된 중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신청인은 프레임이 자전거의 필수 부품이긴 하나 다른 부품들과 함께 복잡한 조립 공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인 자전거로 탈바꿈되었으며, 프레임 보다 그 외 부품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기타 부품 제조 및 최종 조립국인 대만을 원산지로 주장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 하지만 CBP는 HQ 735368, HQ H253522, 그리고 NY N302992 사례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대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부품의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를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산으로 판정함

결론

-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

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자전거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프레임이 완성된 자전거의 형태, 크기와 특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판단하며, 기타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봄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358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358>
-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368>
-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253522>
-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https://rulings.cbp.gov/ruling/N30299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4

낙숫대-릴 세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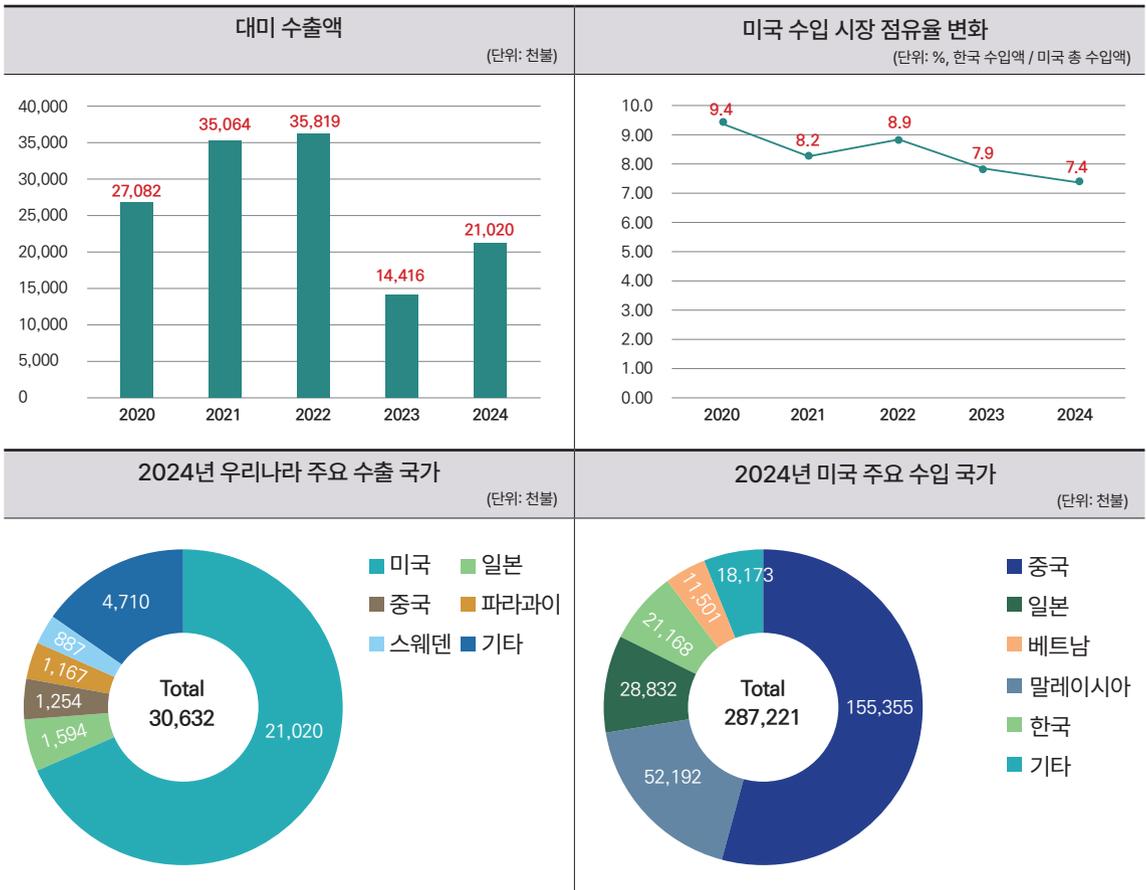
사례명	낙숫대-릴 세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0250 (2020.03.17.)
사실관계	한국산 릴을 중국으로 수입한 후 중국에서 생산된 낙숫대와 조립하여 완성된 낙숫대-릴 세트를 소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낙숫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9507.3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3.9~9.2% or 24¢ each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9507.3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낚시대-릴 세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0250 (2020.03.17.)

사실관계

요청자	Pure Fishing, Inc.	
제품명	• 낚시대-릴 세트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대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섬유 또는 흑연,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세라믹, 알루미늄, 플라스틱, EVE 폼, 코르크 등으로 구성 • 릴 (한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아연, 마그네슘, 황동 등으로 구성 	
완제품 HTSUS	• 9507.30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한국에서 릴 제작 후 중국 수출
 2. 중국에서 중국산 낚시대와 함께 조립하여 낚시대-릴 세트로 완성
 3.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다만,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한 제조 또는 결합 공정만 거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

판정 결과

- ☐ 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싯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안한 소매 포장 상의 문구인 “Reels Made in Korea, Rods Made in China”는 동일한 크기의 글꼴로 표시되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기로 인정됨

결론

- ✓ 최종 제품인 낚싯대-릴 세트의 원산지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이에 따라 릴의 원산지는 한국, 낚싯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타국산 세트 구성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다른 구성품과 단순히 결합하고 소매 포장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0250 (2020.03.17), <https://rulings.cbp.gov/ruling/N31025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5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요약

사례명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5966 (2020.04.16.)
사실관계	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제조된 샤프트와 칼라를 대만으로 수입한 후, 대만에서 제조된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와 결합하여 다기능 수공구인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완성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Neck 6-in-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재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 •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³⁾

사 례 명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5966 (2020.04.16.)

사실관계

요청자 Great Neck (대리인: Mallory Alexander International Logistics)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eatNeck 6-in-1 Screwdriver (모델명: SKU SD4B)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손잡이 강철제 원통형 샤프트 교체 가능한 양면 비트 2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 수공구로서 너트 드라이버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교체 가능한 비트를 장착하여 스크루 드라이버로 사용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05.40.00

제조과정



상세공정

- 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샤프트(shaft) 및 칼라(collar) 제조
- 중국산 샤프트 및 칼라를 벌크 형태로 대만 수출
- 대만 제조 공정
 -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
 - 손잡이에 칼라 압입
 - 샤프트에 비트 삽입 후 손잡이에 결합
 - 제품 라벨 부착 및 포장
- 미국 수출

3)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지며,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관련 법령 및 분석

- 신청인은 NY N024981 사례를 근거로, 비트는 손잡이와 샤프트 없이도 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크루 드라이버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은 대만에서 제조한 비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24981 (2008.03.20.)*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날(blade)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중국산 손잡이와 조립하여 스크루 드라이버 완성

판정 손잡이가 중국에서 부착되었더라도 해당 스크루 드라이버가 새로운 명칭, 성질 및 용도를 갖는 물품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완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CBP는 N024981 사례가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본 사안의 스크루-너트 드라이버는 너트 드라이버와 스크루 드라이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라는 점에서 N024981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460 (1989.05.26.)*

사례 양면 사용이 가능한 스크루 드라이버 비트가 벌크 상태로 미국에 수입되어 나사(screws) 및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와 함께 세트로 재포장 됨

판정 비트가 수입 시점에 완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에서의 재포장은 단순한 제조 과정에 불과하여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

판정 결과

- ☑ GreatNeck 6-in-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재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
- ☑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결론

-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핵심 부품인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안 및 N024981 사례와 같이 최종 제품의 명칭이 스크루 드라이버로 동일할지라도 실제로 최종 제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5966 (2020.04.16.), <https://rulings.cbp.gov/ruling/H305966>
- CBP Ruling NY N024981 (2008.03.20.), <https://rulings.cbp.gov/ruling/N024981>
- CBP Ruling HQ 731460 (1989.05.26.), <https://rulings.cbp.gov/ruling/73146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6

공기청정기

요약

사례명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177 (2020.05.04.)
사실관계	<p>시나리오 1 멕시코산 부품(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및 중국산 부품(팬 블레이드, 모터, 소형 전기부품 등)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과 함께 다음의 공정을 수행하여 공기청정기 생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형 부품 부분 조립 2)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3)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4) 테스트 및 포장 <p>시나리오 2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은 동일하나 플라스틱 부품을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함</p>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이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란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p> <p>시나리오 2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 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⁴⁾

사 례 명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177 (2020.05.04.)

사실관계

요청자	Sunbeam Products, Inc (대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제품명	•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 (모델 번호: HAP8650)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 탄소 전처리 필터(carbon pre-filter) • 3개의 헤파 필터 • 플라스틱 부품 등
	용도	• 가정용 먼지, 연기, 곰팡이 등과 같은 공기 중 알레르겐 및 오염 물질의 제거나 냄새 감소용

제조과정



상세공정

시나리오 1

✓구성요소

부품명	제조국
• 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멕시코
• 소형 전기부품, 전원 코드, 하우징 자석, 금속 브래킷, 튜브 클립, 패스너, 인쇄회로기판(PCB), 팬 블레이드, 모터, 3M 테이프, 박스, 발포 포장재 등	중국
• 플라스틱 부품(하우징 구성품, 제어판, 스위치 커버, 스위치 박스, 손잡이, 브래킷 등) • 실리콘 부품(절연재, 와셔 등) • 금속 부품(나사 및 너트, 단자 캡, 무연 납땜 와이어 등) • 포장 부품(인쇄 스티커, 라벨, 제품 설명서, 포장재 등)	인도네시아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 인도네시아 제조 공정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약 60분에 걸쳐 150개 이상의 부품을 가공 및 조립)
 1.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 제조
 2. 소형 부품 부분 조립
 3.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4.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수행(단계별 테스트 수행)
 5. 완성품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 동일
- 다만,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이 중국에서 수행되고 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함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관련 법령
및 분석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지며,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
- 신청인은 소형 부품 부분 조립, 특정 부품 추가 가공, 최종 제품 조립 등의 공정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라고 주장하면서 HQ 557331, HQ 962528, NY 227976, NY N301616 사례를 인용하였으며, CBP는 해당 사례들을 검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 사례** 커피메이커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미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멕시코에서 부품으로 사출 성형한 후, 이 부품들을 미국산 구성요소와 함께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 판정** 멕시코에서 사출 성형 과정에서 열 사출이 발생한다는 점과 여러 구성요소가 멕시코에서 조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조립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 않을지라도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멕시코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 사례** 정전 표시등(power failure light)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PCB를 포함한 여러 태국산 부품과 기타 외국인 부품을 태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함
- 판정**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PCB를 만드는 과정과 PCB를 전구 홀더 어셈블리, 플러그 블레이드 어셈블리, 상·하부 하우징 어셈블리와 결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정함 (**태국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 사례** 독일산 다결정 태양전지, 일본산 전면 시트, 기타 중국산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
* 본 판정은 HQ H298653 (2018.11.19.) 결정에 의해 실질적 변형 분석과 원산지판정 부분이 수정됨
- 판정** 수정된 결정(HQ 298653)에서 CBP는 독일산 태양전지가 태양광 패널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중국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태양전지의 원산지인 독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 사례** 전구 및 전선을 포함하는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후 기타 캄보디아산 부품과 조립하여 스트링 조명 세트로 완성

캄보디아 제조 공정	
1	중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램프 홀더와 램프 하우징으로 성형
2	전구를 연결하고 완성된 램프 조립 기계에서 램프를 제작
3	전선 절단
4	램프 소켓, 플러그 및 커넥터 조립
5	모든 부품을 연결하여 스트링 제작
6	전선을 절단 및 피복 제거한 후 단자에 고정하고 시험 및 포장 수행

- 판정** 개별 부품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조립 과정을 통해 각각의 부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뚜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창출되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캄보디아산**)

- CBP는 신청인이 인용한 사례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아래의 판례 및 판정 사례를 인용함

❖ 참고 판례: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4 CIT 1191, 120 F. Supp. 2d 1091 (2000)

사례 무선 전화기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기타 부품들을 조립하는 작업과 탈착식 교류(AC) 어댑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판결 CIT는 '성질(character)'이라는 용어를 개별 물품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구조, 형태, 재료 또는 기능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정의하면서, 전화기의 본질은 본체와 수화기에 있으며, 소비자는 AC 어댑터의 특정 기능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수화기와 본체가 제공하는 통신 기능 때문에 구입하므로, 수화기와 본체 조립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AC 어댑터 설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라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들은 HQ 557331 및 NY N301616 사례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성형과 조립이 단일 국가 내에서 수행됨

- 특히 플라스틱 부품은 완성된 장치의 구조와 외관을 형성하므로 완제품의 성격과 용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우징과 외부 요소가 없다면 수입된 부품들은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식별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

- 팬과 필터가 공기청정기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팬, 모터, 전자 부품, 하우징, 외부 요소로 구성된 콘솔은 필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로 식별 가능하며, 콘솔만으로도 최종 제품의 기본적인 구조, 외관, 작동 능력이 제공됨

- 일부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산일지라도, 이러한 부품들이 멕시코산 필터 및 인도네시아산 부품들과 조립되면서 개별 부품들의 개별적 정체성은 상실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 부분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함

☑ **시나리오 2** 콘솔의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 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 시나리오 1: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부품이 인도네시아산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 ✓ 시나리오 2: 대부분 주요 부품이 중국산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II 시사점

- 사안의 공기청정기와 같이 여러 부품 및 공정이 수반되는 경우, CBP는 주요 부품의 원산지 같은 개별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주요 부품의 성격, 전체 공정의 복잡성, 노동 투입 정도 등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제품의 본질이 어디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177 (2020.05.0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77>
-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https://rulings.cbp.gov/ruling/557331>
-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https://rulings.cbp.gov/ruling/962528>
-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https://rulings.cbp.gov/ruling/227976>
- CBP Ruling HQ H298653 (2018.11.19.), <https://rulings.cbp.gov/ruling/H298653>
-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01616>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00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819429/uniden-america-corp-v-united-states/>

case
7

식료품용 저울

요약

사례명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705 (2020.05.27.)
사실관계	대만, 스위스, 중국,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네 가지 주요 어셈블리(작업 자동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프린터 어셈블리, 베이스 유닛)를 만들고 이를 최종 조립하여 식료품용 저울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래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⁵⁾

사 례 명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705 (2020.05.27.)

사실관계

요청자	Mettler-Toledo, LLC (대리인: Sidley Austin LLP)	
제품명	• 식료품용 저울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스위스, 중국 및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의 부품(대부분 중국산)으로 제조되며, 아래와 같은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프린터 어셈블리 - 베이스 유닛 	
제품 용도	• 식료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중량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고객에서 표시하는 기능 및 가격 라벨을 인쇄하는 기능 수행)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산 LCD 터치스크린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개별 구성요소 (보조 PCBA, 케이블, 내·외부 커버, 어댑터, 실링 링, 타이 및 나사 등 모두 중국산)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5단계로 구성)
2.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산 LCD 스크린을 포함한 총 28개의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4단계로 구성되며,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제조 공정과 유사)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3. **프린터 어셈블리**: 50개의 중국산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60단계로 구성)
 - 프린터 헤드, 커버 패널, 용지 재활용 모듈, 하단 모듈의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 제조
 -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프린터 어셈블리를 제조한 후, 프린트 기능 확인을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한 테스트 수행
4. **베이스 유닛**: 메인 PCBA와 2개의 보조 PCBA, 파워 컴포넌트, 계량 플레터와 로드셀(load cell)을 포함하여 73개의 계량용 구성요소가 포함되며(대부분 중국산), 이 구성요소들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6단계 55개의 공정으로 구성)
5. **최종 조립**: 각각의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완성
6. **최종 테스트**: 멕시코에서 미국산 및 독일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능테스트 수행
7.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된 구성요소, 제조 공정 등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판정 결과

- ☐ 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레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 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결론

-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결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안에서 제시된 저울의 경우, 4가지의 서브 어셈블리를 통해 계량, 라벨 인쇄, 디스플레이 표시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나, CBP는 저울의 핵심이 계량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 유닛의 원산지를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1705 (2020.05.27.), <https://rulings.cbp.gov/ruling/N31170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ed=on

case
8

차량용 충전기

요약

사례명	차량용 충전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3137 (2020.07.29.)
사실관계	중국산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한 후,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하고 생산된 PCBA와 기타 부품을 결합하여 차량용 충전기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최종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기를 변환하고 이를 USB 소켓을 통해 연결된 개인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본 사안에서 PCBA는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필리핀에서 생산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필리핀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⁶⁾

사 례 명 [차량용 충전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3137 (2020.07.29.)

사실관계

요청자	D and S Industries (Philippines) Corporation	
제품명	• 3.4A 차량용 충전기 (모델 번호: DC-204E)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 • 전선 • 플러그 단자 • 플라스틱 성형 하우징 	
용도	• 차량 내 개인 전자기기 충전용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중국산 부품 필리핀으로 수입 및 일부 부품 필리핀 자국 내 조달
 2. 필리핀 공정
 -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빈 인쇄회로기판에 집적회로, 저항기 등을 부착하여 PCBA 생산
 - 플러그 단자 부착 및 전선 납땜
 - 플라스틱 하우징 내 조립
 - 초음파 용접을 통해 밀봉
 - 검사 및 테스트 실시
 - 포장
 3. 미국 수출

6)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최종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기를 변환하고 이를 USB 소켓을 통해 연결된 개인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됨
- ☑ 본 사안에서 PCBA는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필리핀에서 생산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필리핀임

결론

- ✓ 필리핀에서 수행된 공정이 PCBA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3.4A 차량용 충전기의 원산지는 필리핀임

II 시사점

- CBP는 PCBA가 최종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PCBA 제조를 위해 SMT, 솔더링 공정이나 이에 준하는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3137 (2020.07.29.), <https://rulings.cbp.gov/ruling/N31313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파인애플 및 바나나 푸레

요약

사례명	파인애플 및 바나나 푸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0517 (2025.07.22.)
사실관계	<p>파인애플 푸레 코스타리카산 냉동 파인애플 조각을 프랑스로 수입한 후 균질화, 혼합, 저온 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쳐 파인애플 푸레 생산</p> <p>바나나 푸레 과테말라산 바나나를 과테말라에서 껍질 벗기기, 으깨기, 여과하여 푸레 베이스를 생산한 후 이를 프랑스로 수입하여 균질화, 혼합, 저온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통해 바나나 푸레 생산</p>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파인애플 푸레 수입된 파인애플 조각과 프랑스에서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푸레는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파인애플 푸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p> <p>바나나 푸레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진 가공을 통해 바나나는 최종 제품의 성질과 용도를 가진 푸레 베이스로 변형되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정은 이러한 푸레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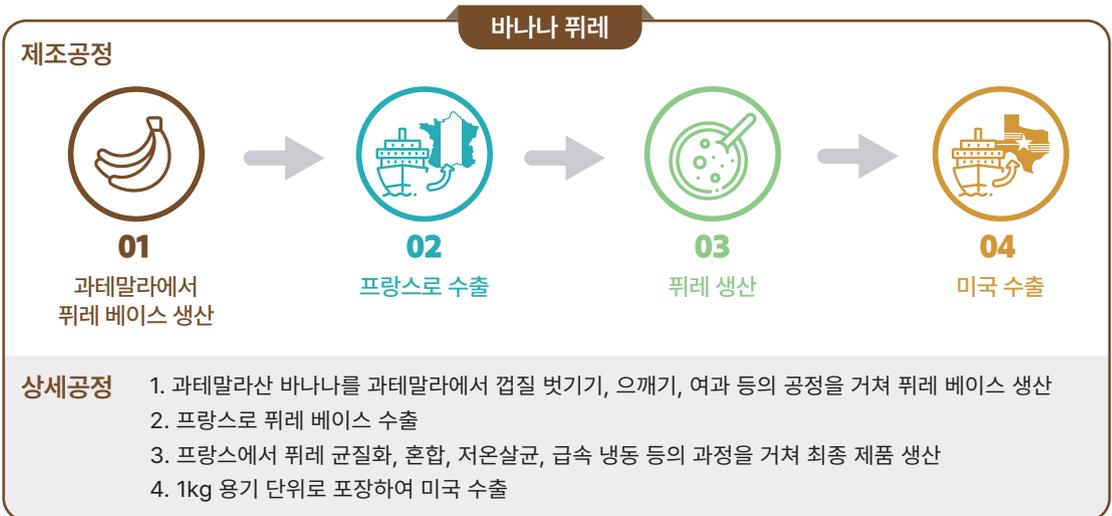
I 판정사례⁷⁾

사 례 명 [파인애플 및 바나나 푸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0517 (2025.07.22.)

사실관계

요청자	European Imports INC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인애플 푸레 • 바나나 푸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인애플 (코스타리카산) • 바나나 (과테말라산)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인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5062 (1990.02.23.)*

사례 아르헨티나산 생땅콩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로 수입하여 땅콩버터로 가공

판정 땅콩버터가 땅콩으로 만들어지고 땅콩의 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제품의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버진아일랜드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558733 (1994.12.02.)*

사례 미국에서 칠레산 아보카도와 기타 미국산 원재료를 과카몰리를 제조

판정 과카몰리가 아보카도로 만들어지고 아보카도의 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제품의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 **파인애플 푸레** HQ 555062 및 HQ W558733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입된 파인애플 조각과 프랑스에서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푸레는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파인애플 푸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으로 판단됨
- ☑ **바나나 푸레**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진 가공을 통해 바나나는 최종 제품의 성질과 용도를 가진 푸레 베이스로 변형되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정은 이러한 푸레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파인애플 푸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바나나 푸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

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Ⅱ 시사점

- 식품의 경우,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원재료를 갈거나 균질화하여 점성이 있는 푸레, 잼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517 (2025.07.22.), <https://rulings.cbp.gov/ruling/N350517>
- CBP Ruling HQ 555062 (1990.02.23.), <https://rulings.cbp.gov/ruling/555062>
- CBP Ruling HQ W558733 (1994.12.02.), <https://rulings.cbp.gov/ruling/W55873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10

피부용 연고

요약

사례명	피부용 연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0643 (2025.07.24.)
사실관계	주요 유효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인 Nystatin(이탈리아산)과 Triamcinolone Acetonide(인도산)을 인도에서 기타 비활성 성분들과 혼합하여 피부 칸디다 증용 연고를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항진균제인 Nystatin은 효모를 제거하여 감염을 없애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은 항염 작용을 통해 감염과 관련된 염증, 가려움 및 발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의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므로,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됨 (인도산)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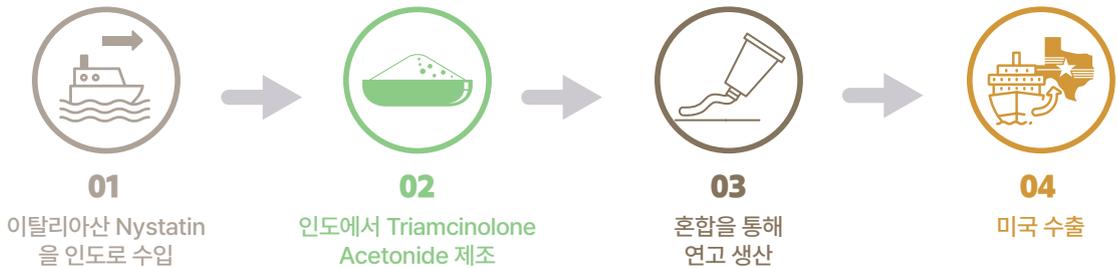
사례명 [피부용 연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0643 (2025.07.24.)

사실관계

요청자	Viona Pharmaceuticals, Inc	
제품명	• 피부 칸디다증용 연고	
제품 구성	• 두 가지 주요 유효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로 구성 - Nystatin - Triamcinolone Acetonide	
용도	• 피부 칸디다증(피부의 효모 감염)의 국소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이탈리아에서 Nystatin 제조
2. 인도에서 Triamcinolone Acetonide 제조
3. 이탈리아산 Nystatin과 인도산 Triamcinolone Acetonide를 인도에서 비활성 성분들과 혼합하여 최종 국소 연고 생산
4. 미국으로 수출)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의약품과 같은 화학제품 제조에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경우, CBP는 일관되게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최종 물품이 원재료의 본질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검토해 옴
- 이와 관련하여 CBP는 의약품을 벌크 형태(bulk form)에서 정량화된 투여 형태(measured doses)로 가공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Q 561544 (2000.05.01.)*, *HQ 735146 (1993.11.15.)*, *HQ H267177 (2016.11.05.)*, *HQ H233356 (2012.12.26.)* 및 *HQ 561975 (2002.04.03.)*

- 다만, 이러한 가공이 두 개 이상의 유효 의약 성분(API)의 결합을 수반하고, 그 결합의 결과 각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3207 (2005.06.01.)*

판정 결과

☐ 항진균제인 Nystatin은 효모를 제거하여 감염을 없애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은 항염 작용을 통해 감염과 관련된 염증, 가려움 및 발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의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므로,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됨 (인도산)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임

II 시사점

- CBP는 연고와 같은 의약품의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여러 유효 의약 성분(API)을 혼합하여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혼합된 제품이 각각의 API를 단독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한다면 단순 혼합 공정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643 (2025.07.24.), <https://rulings.cbp.gov/ruling/N350643>
-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ttps://rulings.cbp.gov/ruling/561975>
- CBP Ruling HQ 561544 (2000.05.01.), <https://rulings.cbp.gov/ruling/561544>
- CBP Ruling HQ 735146 (1993.11.15.), <https://rulings.cbp.gov/ruling/735146>
- CBP Ruling HQ H267177 (2016.11.05.), <https://rulings.cbp.gov/ruling/H267177>
- CBP Ruling HQ H233356 (2012.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233356>
-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ttps://rulings.cbp.gov/ruling/561975>
- CBP Ruling HQ 563207 (2005.06.01.), <https://rulings.cbp.gov/ruling/56320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ORIGIN CASE

Vol. 6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